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일부인정된 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·강 요미수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(공소취소 로공소기각결정)



[울산지방법원 2017. 12. 15. 2017고합194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 최원석(기소), 이승우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박성남 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, 고지한다. 다만, 공개·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죄에 한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